

2022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22. 7. 14.(목) 오전7시30분

□ 장소 : T&S빌딩 5층,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회의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

2022년 제7차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소집 통보일 : 2022. 7. 5.

○ 이사 정수 : 9명(재적이사 9명)

○ 감사 정수 : 2명(재적감사 1명)

1. 이사회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07:30~10:10

2. 이사회 장소 : T&S빌딩 5층,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회의실(서울 중구 서애로 33)

3. 임원 참석 내용

○ 참석 이사(8명) : 김종철, 김동건, 남궁근, 문대원, 박정운, 양인집, 이돈구,
최맹호

○ 불참 이사(1명) : 정태영

○ 참석 감사(1명) : 윤규섭

○ 불참 감사(0명) : 없음

4. 이사회 안건

가. 심의안건

- (1) 학교법인 감사 선임(안)
- (2) 학교법인 이사 선임(안)
-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5)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6)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 (7)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8) 수익용기본재산(전남 목포시 소재 토지) 매도(안)
- (9) 수익용기본재산(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 매입(안)
- (10) 법무비용 처리방안 변경(안)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11)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나. 보고사항

(1)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행정조치 관련 보고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김종철 의장(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다.
- 이에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이 재적이사 9인 중 8인 참석으로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2022년 제7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 김종철 의장이 전회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자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이 보고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전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7. 회의내용

가. 심의안건

(1) 학교법이 감사 선임(안)

- 김종철 의장이 제1호 안건을 상정하다. 이어 김종철 의장이 임복규 개방감사가 2022.03.31. 자로 중도 사임한 바 있고, 후임자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배한영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설명하다. 아울러, 후보자의 추천서, 이력사항 등은 배포된 회의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임복규 감사의 후임자로 배한영 후보자의 선임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한영 후보자가 개방감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 개방감사 선임 명단

선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임기	비고
감사	배한영	남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2023. 10. 13. 까지	신임, 개방감사

간인(서명)	김종철	장지호	
--------	-----	-----	---

(2) 학교법이 이사 선임(안)

- 김종철 의장이 제2호 안건을 상정하다. 문대원, 정태영 개방이사의 임기가 2022.08.13.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거쳐, 임기만료 인원의 2배수인 김인식, 김호정, 문휘창, 송명배 등 4인이 추천되었음을 설명하고, 각 후보자의 이력사항은 배포된 회의 자료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다. 이사회는 개방이사 후보자 4인 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하므로 우선 투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음을 설명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어 이사들의 논의를 거쳐,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각 이사 1인은 후보 4인 중 2인까지만 기표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2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자는 투표 방식에 참석이사 전원 동의하다.
(이어 투표 용지를 배부하고, 이사들이 투표를 실시하다.)
(이어 투표 용지를 수거하고, 윤규섭 감사,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이 개표를 실시하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개표 결과, 김인식 후보 2표, 김호정 후보 6표, 문휘창 후보 8표, 송명배 후보 0표를 각각 득표하였음을 발표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문대원 개방이사 후임으로는 김호정 후보를, 정태영 개방이사 후임으로는 문휘창 후보를 선임하겠음을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각각 선임·의결하다.

□ 이사 선임 명단

(2)-① 문대원 이사 후임

-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사 6인의 찬성으로 김호정 후보를 개방이사로 선임·의결하다.

선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임기	비고
이사	김호정	남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	신임, 개방이사, 교육경험이사

간인(서명)	김종철	이정호	
--------	-----	-----	---

(2)-② 정태영 이사 후임

-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사 8인의 찬성으로 문휘창 후보를 개방이사로 선임·의결하다.

선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임기	비고
이사	문휘창	남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	신임, 개방이사, 교육경험이사

(3)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3호 안건을 상정하고,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파견 대상자로 제청되었기에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퇴장을 요청하다.

(장지호 법인사무처장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 이어 윤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장이 2022학년도 제2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외국인 신규임용 11명, 내국인 정년트랙 승진 1명, 외국인 휴직 1명, 내국인 파견 1명, 외국인 해임 2명 등의 임용사항을 각각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3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다.

(장지호 법인사무처장 회의장에 입장하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의결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의결(불임. 승인 명단 참조)

* 불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4)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4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윤성우	
--------	-----	-----	---

- 이어 이선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학처장이 2022학년도 제2학기 교원 임용사항으로 외국인 신규임용 2명, 내국인 정년트랙 승진 2명, 내국인 재임용 2명, 외국인 재임용 1명, 외국인 해임 1명 등의 임용사항을 각각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에 대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의 개선을 요청하다.
 - 한국어학부 소속 재임용대상자 2명의 재임용 심사표에 따르면, 학과발전 기여도 세부항목의 점수를 2명 모두 동일하게 부여했는데, 향후에는 평가자 교육 등 객관성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람.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4호 안건에 대한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의결하다.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의결사항

- 승인 여부 : 원안 의결(불임, 승인 명단 참조)

* 불임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5)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교원 임용(안)

- 김종철 의장이 제5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 요청하다.
- 이어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으로부터 용인한국외대부설고 소속의 복직 및 청원휴직을 보고받다. 교사는 2022년 1학기말까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예정이었으나, 복직과 동시에 6개월(2022학년도 제2학기) 청원휴직을 추가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교원 수급을 고려했을 때 청원휴직을 승인해도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 이에 대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5호 안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박재호	
--------	-----	-----	---

□ 용인한국외대부설고 교원 임용 승인 사항

○ 휴·복직 승인

성명	교과	성별	사유	기간	복직예정일	비고
			육아휴직 (첫째) 복직	2021.3.1.~ 2022년 1학기 말(18개월)	-	육아휴직(첫째) 복직과 동시에 청원휴직 시작
			청원휴직	2022년 2학기 초~ 2023.2.28.(6개월)	2023.3.1.	

(6)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 김종철 의장이 제6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김광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이 고등교육법 개정 및 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각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성희롱·성 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업무 뿐 아니라 기타 인권침해행위 관련 상담 및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여, 총장 직속기구로 ‘인권센터’를 신설 하고, ‘성평등센터’를 폐지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6호 안건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불임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직제규정 개정 승인사항

- 승인여부 : 원안 의결
- 시 행 일 : 2022년 7월 14일

* 불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7)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

- 김종철 의장이 제7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이 정관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간인(서명)	김종철	장지호	
--------	-----	-----	---

다.

1)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 반영

- 임원 선임 제한 요건 강화(안 제25조제7항)
 - 임원취임승인 취소자: 10년, 해임된 학교장: 6년, 파면된 교원: 10년
- 이사회 소집시 학교 홈페이지에 소집 관련 사전공지 의무화(안 제34조제3항)
- “임용”의 정의에 “강등” 추가(안 제43조제1항)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증원 및 구성 변경(안 59조제1항, 제2항, 제3항)
 - 징계위원 9명으로 증원
 - 외부위원 2인 이상 포함(고등학교는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이상 포함)
 -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 초과 불가
-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송부 대상에 관할청 추가(안 제65조제2항)
- 성폭력범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보(안 65조제5항)

2) 한국외대 직제개편 사항

- 총장 직속기구로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성평등센터’를 폐지(안 제92조제1항)

3) 행동강령 관련 보완사항 반영

-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제72조의5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사항”, 행동강령 위반시의 징계 등 제재 조치 명시(안 제131조의 2, 제131조의 3)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정관 개정(안)의 원안 승인 여부를 묻자, 이돈구 이사의 동의, 문대원 이사의 재청을 거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 정관 개정 승인사항

- 1) 승인여부 : 원안 의결
- 2) 시 행 일 : 2022년 7월 14일

* 붙임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개정 신·구대비표

간인(서명)	김종철	이돈구	
--------	-----	-----	---

(8) 수익용기본재산(전남 목포시 소재 토지) 매도(안)

- 김종철 의장이 제8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으로부터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중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소재 967-92, 967-93, 967-133 등 3필지, 101㎡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함을 보고받다. 해당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여 여러 차례 현지 방문을 통하여 거주자 확인 노력을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점유면적에 대한 사실 확인(측량필요)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향후 관리적 측면을(측량비용, 재산가치) 감안하여 매각을 진행하고자 한다.
매각예정 금액은 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승인을 요청하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8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불임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붙임 : 수익용기본재산 매도 승인사항

(9) 수익용기본재산(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 매입(안)

- 김종철 의장이 제9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장지호 법인사무처장으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전면부와 인접해 있는 경찰청 소유 이문파출소 부지(동대문구 이문동 363-15번지)를 매입하고자 함을 보고받다. 해당 토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면 도로변에 위치해 있던 이문파출소가 최근 이전 및 철거가 완료되어 2022년 하반기에 매각 공고가 있을 예정이고,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일반상업지구로 써, 인접한 한국외국어대학교 270-32(142㎡) 및 270-1번지(46㎡)와 연계하여 개발할 경우, 교육활동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매입면적은 총36㎡, 공시지가는 ㎡당

간인(서명)	김동진	홍재오	
--------	-----	-----	---

후 책정될 예정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공고가 게시되면 감정평가금액 등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드린다.

- 이어 임원들이 숙의한 후, 김종철 의장이 제9호 안건의 승인 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붙임과 같이 원안을 승인·의결하다.

*붙임 : 수익용기본재산 매입 승인사항

(10) 법무비용 처리방안 변경(안)

- 김종철 의장이 제10호 안건을 상정하고, 보고를 요청하다.
 - 이어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지원처장이 그동안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해설서의 회계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인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반 소송과 법률 자문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왔는데, 이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2019년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지적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기에 학교 경영진의 적극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법무비용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교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무비용의 경우,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여부를 따져서 집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면 무리 없을 듯하며, 자문비용의 경우에는 노무 및 인사와 관련된 자문은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드린다.
 - 이어 김종철 의장이 소송 및 자문비용 집행 주체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 소송비용은 현재도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을 듯 하고, 자문비용의 경우에는 총장이 필요에 따라 모든 자문 경비를 교비를 지출 가능하다는 의견 및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금번 이사회에서는 다양한 판례 및 학교측의 고충이 있음을 이사회와 공유하는 정도로 논의하고,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재상정하겠음을 제안하자, 이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우	
--------	-----	-----	---

(11)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상자 선임(안)

- 김종철 의장이 제11호 안건을 상정하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간서명 대상자로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이사, 윤규섭 감사를 선임하겠음을 발의하자,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의결하다.

나. 보고사항

(1) 한국외국어대학교 HK+ 지원사업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행정조치 관련 보고

- 김종철 의장이 보고사항 제1호의 보고를 요청하자,
-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HK+지원사업 연차(단계)평가 결과 안내에 포함된 한국연구재단의 행정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 제제 및 시정 요구 내용 : 한국외대는 「HK교원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1 유형 종료 후 절반 이상의 HK교수에 대하여 연구소 이외로 배속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대한 시정 필요, 미시정 시 지원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 가능
 - 시정계획 : 2022년 말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HK교원인사규정 중 제9조의1 조항 개정 필요
- 이어 임원들이 다음과 같이 논의하다.
 - 앞으로 HK project 수주여부 전반적인 검토 필요, 연구력 증진과 학문 기여도, HK교원의 활용도 및 인건비 총체적인 검토 필요
 - 기존 연구중인 HK project는 연구소 차원에서 독립채산제 가능한지 검토 요망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이어 김종철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2년 제7차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2년 7월 14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김 종 철

(서명) 김종철

이 사 김 동 건

(서명) 김동건

이 사 남 궁 근

(서명) 남궁근

이 사 문 대 원

(서명) 문대원

이 사 박 정 운

(서명) 박정운

이 사 양 인 집

(서명) 양인집

이 사 이 돈 구

(서명) 이돈구

이 사 정 태 영

(서명)

이 사 최 맹 호

(서명) 최맹호

감 사 윤 규 섭

(서명) 윤규섭

(붙임)

간인(서명)	김종철	박정운	
--------	-----	-----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신규임용

간인(서명)	김정철	유정인	
--------	-----	-----	---

간인(서명)

김동철 이재우



(붙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 임용 승인 명단

1. 신규임용

2. 승진임용

3. 내국인 교원 재임용

간인(서명)	김 동철	이 정 우	
--------	------	-------	---

4. 외국인교원 재임용

5. 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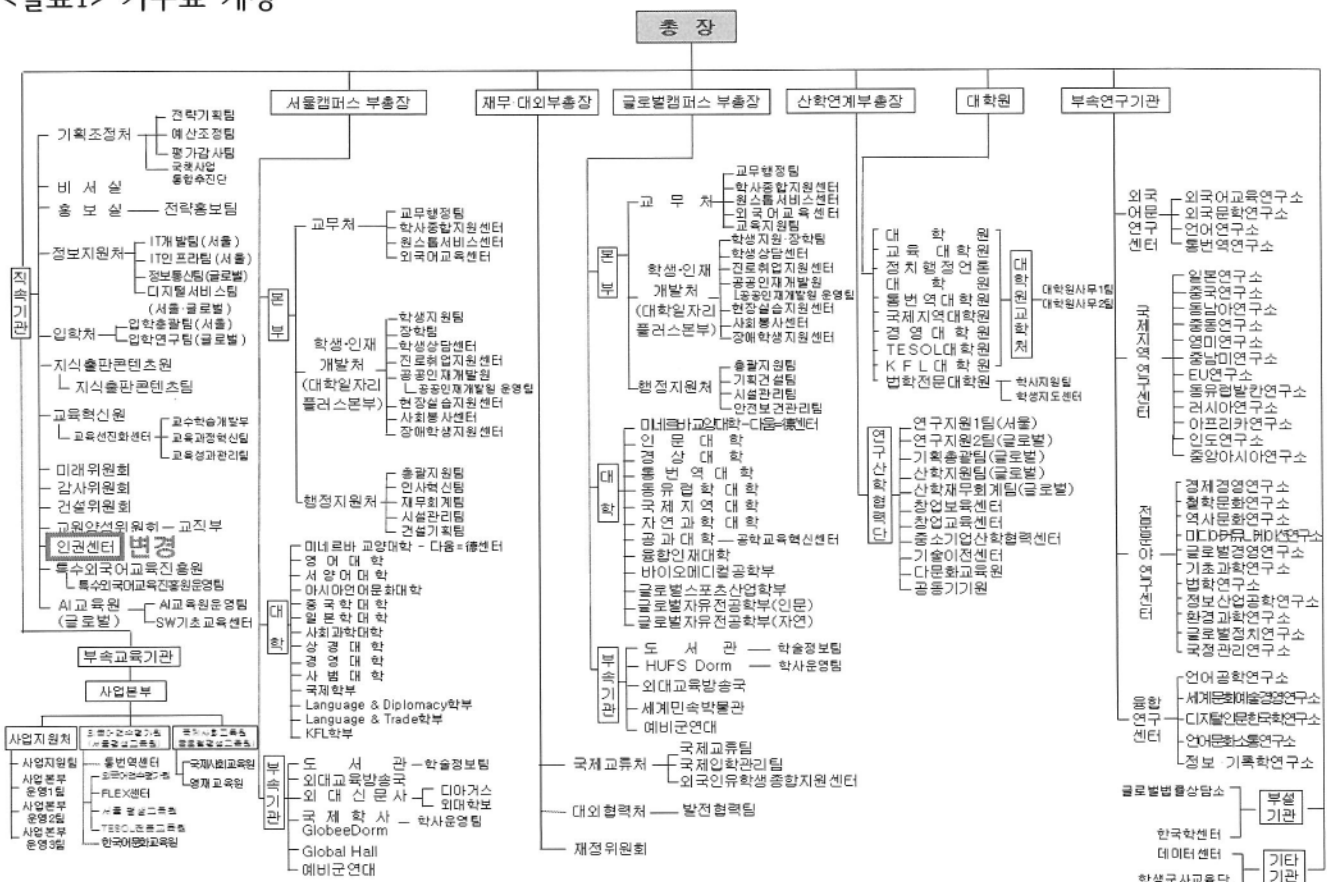
간인(서명)	김동철	이정수	
--------	-----	-----	---

(붙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조직) 본 대학교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변경
제5조 (구성) ① (생략) ② 총장직속기관으로 기획조정처, 비서실, 홍보실, 정보지원처, 입학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u>성평등센터</u> , AI교육원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고 <u>성평등센터</u> 는 캠퍼스별로 운영한다.	제5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장직속기관으로 기획조정처, 비서실, 홍보실, 정보지원처, 입학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u>인권센터</u> , AI교육원을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 <u>한다</u> .	인권센터 신설 및 자구 수정
제35조 (직위) ① 각 처, 대학, 대학원 및 기타 행정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장을 둔다. 1.~24. (생략) 25. <u>성평등센터</u> : 센터장	제35조 (직위) ① 각 처, 대학, 대학원 및 기타 행정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장을 둔다. 1.~24. (생략) 25. <u>인권센터</u> : 센터장	자구 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1> 기구표 개정



간인(서명)

김정철	이재우
-----	-----



(붙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제24조의 5(생략)	제1조~24조의 5(현행과 같음)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⑥(생략) ⑦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5년 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 이 경과한 자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⑥(현행과 같음) ⑦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 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 이 경과한 자	사립학교법 제21조, 제22조 반영
제26조~제33조(생략)	제26조~제33조(현행과 같음)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②(생략) (신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②(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17조제5항 반영
제35조~제42조(생략)	제35조~제42조(현행과 같음)	
제43조 (임용) ①“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⑫(생략)	제43조 (임용) ①“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재임용,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 해제, 정직, 강등 ,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⑫(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제2조제4호 반영
제43조의 2~제58조(생략)	제43조의 2~제58조(현행과 같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7인 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 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사립학교법 제62조 반영

간인(서명)	김정철 정우	
--------	--	---

현 행	개 정	비고
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1명</u>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신설) ④~⑤(생략)	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u>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한정한다.)</u>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u>2명</u>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u>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 제2호라목에 따른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u> ④~⑤(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제62조 반영
제60조~제64조(생략)	제60조~제64조(현행과 같음)	
제65조 (징계의결) ①(생략)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u>사유</u>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u> ③~④(생략) (신설)	제65조 (징계의결) ①(현행과 같음)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u>이유</u>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u> ③~④(현행과 같음) ⑤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66조제2항 반영 사립학교법 제66조제5항 반영

간인(서명)	김정철	이정우	
--------	-----	-----	---

현 행	개 정	비고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91조(생략)	⑥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91조(현행과 같음)	
제92조 (하부조직) ①대학교 양 캠퍼스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행정지원처를 두고 서울캠퍼스에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정보지원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및 <u>성평등센터</u> 를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고 <u>성평등센터는 캠퍼스별로 운영하며</u> , 재정위원회는 재무·대외부총장 산하에 둔다. ②~⑩(생략)	제92조 (하부조직) ①대학교 양 캠퍼스에 교무처, 학생·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행정지원처를 두고 서울캠퍼스에 기획조정처, 국제교류처, 대외협력처, 입학처, 정보지원처, 지식출판콘텐츠원, 교육혁신원, 미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재정위원회, 교원양성위원회 및 <u>인권센터</u> 를 두되 교원양성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배속하며, 재정위원회는 재무·대외부총장 산하에 둔다. ②~⑩(현행과 같음)	인권센터 신설. 성평등센터 폐지
제92조의 2~제131조(생략)	제92조의 2~제131조(현행과 같음)	
제131조의2 (<u>행동강령</u>) 법인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은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의2 (<u>청렴의무</u>)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4 반영
(신설)	제131조의3 (사학기관 행동강령) ①제131조의2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일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고 대상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반영

간인(서명)	김동철	이재우	
--------	-----	-----	---

현 행	개 정	비 고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이사장(학교의 장)은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생략)	제132조(현행과 같음)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간인(서명)	김동철	박재우	
--------	-----	-----	---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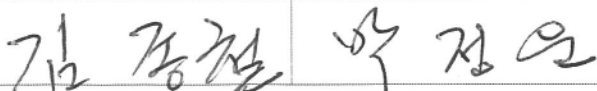
수익용기본재산(전남 목포시 소재 토지) 매도 승인사항

1. 매각 대상토지: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67-92, 967-93, 967-133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공시지가(원) /㎡	감정평가액(원) / ㎡		
						매각예정액	A평가사	B평가사
토지	목포시 용당동	967- 92	대지	15				
		967- 93	대지	73				
		967-133	대지	13				
		계		101				

2. 매각사유

- 가. 3개 필지에 무허가 건물(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현지방문 근거)이 존재하여
- 나. 여러 차례 현지 방문을 통하여 거주자 확인 노력을 하였으나 확인을 못함.
- 다. 2016년 교육부 감사에서 967-133번지에 대한 감사지적도 있었으나
[조치사항: 무단점유(점유면적 3㎡)에 대하여 임대계약 등 체결요구]
- 라. 현지 방문, 우편물 송달(수취불명 반송) 등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 마. 점유자는 물론 점유면적에 대한 사실 확인(측량필요)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바.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측량비용, 재산가치 등)을 감안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간인(서명)		
--------	--	---

(붙임)

수익용기본재산(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 매입 승인사항

1. 매입 대상토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면적(m ²)	공시지가(원)/m ²	비고
토지	동대문구 이문동	363-15	대지	36		일반상업지역
		계		36		

2. 매입사유

- 가. 경찰청에서 위 국유지에 우리 법인의 학교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1990년 2월부터 운영해 오던 이문파출소의 이전, 철거가 완료되었고,
- 나. 해당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매각 계획에 따라 2022년 하반기 매각 공고 예정임.
- 다. 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일반상업지구로 인접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270-32 (142m²) 및 270-1번지(46m²)와 연계하여 개발할 경우 교육 활동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3. 매입조건 및 향후절차

- 가. 매입면적: 36m²
- 나. 토지현황: 이문동 363-15 (지목: 대지)
- 다. 매매금액: 국유지 매각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 책정될 예정
- 라. 매각 공고의 게시된 감정평가금액 및 최저입찰가를 감안하여
- 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공고가 게시되면 즉시 입찰에 참여코자 함
- 바. 입찰공고 개시 이후 이사회의 소집, 심의 일정이 촉박하므로 사전 보고.

간인(서명)	김동철	박정우	
--------	-----	-----	---